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6월 03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6월 03일

3. 제안사유

○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- 지급대상자 선정 :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중
선순위자 1명

○ 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
- 지급 정지 : 사망, 국적 상실, 주민등록 말소, 행방불명, 타 시도 전출 등
- 수당 환수 : 부정수령, 사유 소멸, 잘못 지급 등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개정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복지증진 및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7조의2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전몰군경유족의 범위와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, 전몰군경의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유족의 연령도 다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할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- 유족 중 선순위자 결정 방법 및 기준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1.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,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안 제7조의3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지급대상자의 사망, 국적상실, 주민등록 말소 등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정지하고, 거짓 및 부정 수급,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정한 수당 지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○ 비용추계 관련 전몰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예정액은 1인 월 20천원으로, 「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1인 월 50천원과 차이가 있어 지급액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나,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할 것과 수당 지급액을 1인 월 20천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

□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

- 지원근거 :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- 지원대상 : 7,850명(6·25참전유공자 2,439, 월남전참전유공자 5,411)
- 예산액 : 4,710,000천원 (도비)
 - 산출근거 : 7,850명 × 50천원 × 12월 = 4,710,000천원
- 지원내용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(1인 월 50천원)

□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

- 지원근거 :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
- 지원대상 : 애국지사 1명
- 예산액 : 3,600천원 (도비)
 - 산출근거 : 1명 × 300천원 × 12월 = 3,600천원
- 지원내용 : 독립유공자(애국지사)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(1인 월300천원)